제 2 절 심판청구의 절차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법 제26조 제1항). 청구서는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거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우송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